

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 신규조문대비표

유형	변경전	변경후 (2021년 7월 16일 시행)
신설	<신설>	<p>4 조의 2(대출계약의 철회) ※ 등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다릅니다. ① 채무자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46 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과 체결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② 제 1 항에 따라 은행과 체결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채무자가 대출금 전액에 대한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, 은행은 채무자의 철회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.</p>
신설	<신설>	<p>제 4 조의 3(위법계약의 해지)채무자는 은행과 위법계약을 체결한 경우,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47 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※ 등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다릅니다.</p>
변경	<p>제 25 조(약관·부속약관 변경)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부속약관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,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.</p>	<p>제 25 조(약관·부속약관 변경) ※ 등 조항의 밑줄 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다릅니다.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부속약관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,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7일간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. <u>1.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</u>에 따라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<u>2.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유리하거나 기존 고객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</u> <u>3.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의 경우</u></p>